

2023년 공인노무사 1차 대비

Final Review

[민법-민법총칙]

[핵심요약사항]

이동건 교수

<1조(법원)>

1. 법원의 종류

법률->관습법->조리의 3가지이다. 따라서, 판례는 법원이 아님을 주의.
2. 법률의 의미
 - (1)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라, 성문법 전체를 의미한다.
 - (2) 대통령의 긴급명령도 법원이 될 수 있다.
 -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대법원규칙도 법원이 될 수 있다.
 - (4) 헌법재판소 결정도 국가기관을 구속하므로 법원이 될 수 있다.
 - (5) 조약도 법원이 될 수 있다.
3. 관습법
 - (1) 사실인 관습과의 구별여부

판례는 양자를 구별한다.
 - (2) 변론주의 여부

관습법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할 필요가 없다.(판례)
 - (3) 보충적, 열후적 효력

관습법은 성문법을 변경할 효력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

<2조(신의성실의 원칙)>

1. 적용영역

계약법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법률관계(가족법이나 공법관계까지)를 규율한다.
2. 변론주의 여부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당사자가 할 필요가 없다.(판례)
3. 신의칙의 파생원칙
 - (1) 모순행위금지의 원칙(금반언의 원칙)
 - 1) 판례 사례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이므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2) 모순되는 행위가 가능한 경우

강행규정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피상속인 생전에 한 상속의 포기 약정은 피상속인 사후에 지킬 필요가 없다.)
 - (2) 실효의 원칙
 - 1) 공법관계(예-항소권)에도 실효의 원칙은 적용된다.
 - 2) 해제권과 같은 형성권에도 실효의 원칙은 적용된다.
 - 3) 실효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① 인지청구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서 더 이상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게 되었다라도 인지청구권은 실효되지 않는다.
 - ② 토지소유자가 그 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장기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 가지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실효의 원칙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 (3) 사정변경의 원칙
 - 1) 민법은 사정변경의 원칙 그 자체를 입법화하지는 않았지만, 그 취지를 반영한 조문이 많다.
 - 2)근보증-인정

근보증계약에 있어서 그 계약 체결당시의 근보증인의 지위에 변화가 있으면(예-퇴사)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른 해지가 인정되지만, 채무액이 확정되었다면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른 해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4) 기타 판례

- 1) 학교법인이 A를 사무직원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로 결정하고도 직원발령을 지체하며 여러번 발령을 미루다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최종적으로 통지한 경우
 ---> 위 학교법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2) 병원은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환자의 휴대폰 등의 도난 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줄 신의칙상의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 3)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4.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 요건

- 1)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 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 2) 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은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될 수 있다.
 - 3) 상계권의 남용도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이 때에는 권리남용의 경우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3) 권리의 행사가 권리남용이더라도 권리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지만, 친권은 박탈될 수도 있다.

<3조>

1. 태아의 권리능력

(1) 인정되는 권리(개별적 보호주의)

- 1) 불법행위를 당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권
 특히 태아는 부(父)가 생명침해를 당한 때에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된다.(판례)
- 2) 피상속인 사망시 재산 상속 (유류분권과 대습상속 포함)
- 3) 유증받는 것
- 4) 인지 받는 것

(2) 인정되지 않는 권리

증여받는 권리(판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권.

(3) 그 권리의 행사방법

- 1) 정지조건설(판례). 이는 태아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 2) 사산의 경우에는 어떤 학설을 취하여도 태아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2. 권리능력의 시기와 종기

출생(사망)신고가 없더라도 출생(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권리능력은 발생(소멸)한다.

<4조>

성년의 기간계산은 초일을 산입한다.(158조)

<5조~8조(미성년자)>

1.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1) 원칙

- 1)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그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7조) 이 때의 취소는 철회의 의미이다.
- 2) 취소권의 행사(140조~142조)
 - ① 미성년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없다.(140조)
 - ②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취소권의 수권을 받은 자), 특별승계인, 포괄승계인(예-상속인)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140조)
 - ③ 미성년자측이 취소할 때에 부당이득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이다.(판례)
 - ④ 미성년자측이 취소할 때에 부당이득반환은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141조)
이 때, 그 반환이익이 금전인 때에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한다.(판례)
 - ⑤ 미성년자측이 취소할 때에 전득자가 있어도 취소의 상대방은 미성년자와 법률행위를 한 상대방이다.(142조)
- 3) 추인권 (143조~144조)
 - ①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이 추인할 수 있다.(144조 2항)
 - ② 미성년자가 추인을 할 때에는 단독으로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추인하여야 한다.(144조 1항)

(2)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 1) 권리만을 얻는 행위(5조 1항 단서)
- 2)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5조 1항 단서)
- 3)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6조)
단,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그 허락을 취소(철회의 의미)할 수 있다.(7조)
- 4)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받은 특정한 영업(8조)
 -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으므로(1항), 미성년자는 소송능력을 가지며,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 ② 법정대리인은 그가 한 영업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 할 수 있다.(2항) 이 때의 취소는 철회의 의미이다.
 - ③ 영업 허락의 취소와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2항 단서)

5) 대리행위(117조)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 6) 만17세에 달한 자의 유언행위
- 7) 근로계약의 체결 및 임금청구
- 8)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성년자로 간주한다.

(3)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권리가 소멸하거나 의무가 생기는 경우)

- 1) 부담부 증여를 받는 행위, (의무 발생)
- 2)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를 체결하는 행위, (의무 발생)
- 3) 상속의 승인, 상계, 해제 등 (의무의 발생, 혹은 권리의 소멸)

<9조~14조의 3>

1. 성년후견

(1) 의의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야 한다. 신체적 장애는 요건이 아니다.

(2) 절차 및 효력

- 1) 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청구가 있어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2)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 3)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청구권자이다.
- 4)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의 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은 동의권이 없다.
- 5) 예외 :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 ①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한 경우이다.(10조 2항) 가정법원은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도 있다. (10조 3항)
 - ②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10조 4항)

(3) 성년후견의 종료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하여야 한다.(11조). 성년후견종료심판의 효력은 소급효가 없다.

2. 한정후견

(1) 의의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야 한다.

(2) 절차 및 효력

- 1)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 2)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청구권자이다.
- 3) 피한정후견인의 재산행위능력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 4) 예외
 - ①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피한정후견인의 범위는 제한된다.(13조 1항)
 - ② 가정법원은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도 있다. 13조 2항)
 - ③ 만약 한정후견인이 동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에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13조 3항)
 -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한정후견인이 단독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이는 취소의 대상이 된다. (13조 4항 본문) 그러나,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3조 4항 단서)

3. 특정후견

(1) 의의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하여야 한다.

(2) 절차 및 효력

- 1)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 2)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청구권자이다.
- 3)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때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4)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특정후견인이 선임되고 그에게 법정대리권이 부여되어도 마찬가지이다. 특정후견은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를 보충하는 역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5) 특정후견의 종료

특정후견 기간의 도과 또는 사무처리의 종결로 특정후견은 당연히 종료한다.

6) 가정법원이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 때에는 종전의 특정후견의 종료심판을 하여야 한다.(14조의 3 1항, 2항)

<15조~17조(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1. 최고권

(1) 제한능력자측에서 확답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추인된 것으로 간주하지만(1항, 2항),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3항)

(2) 최고기간

1개월 이상의 기간이어야 한다. (상당한 기간이 아니다.)

(3) 발신주의

최고기간 내에 통지를 "발송"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한다.(15조) (도달주의가 아니다.)

(4) 최고의 상대방 : 제한능력자는 될 수 없다.

2. 철회권

(1) 계약의 경우에 상대방에게 인정된다.

(2) 제한능력자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만 철회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3) 선의자만 행사할 수 있다.

(4) 철회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도 될 수 있다.

3. 거절권

(1) 단독행위의 경우에 상대방에게 인정된다.

(2) 제한능력자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만 거절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3) 선의자뿐만 아니라 악의자도 행사할 수 있다.

(4) 거절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도 될 수 있다.

4.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를 쓴 경우(17조)

(1)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취소할 수 없다.

(2)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 여전히 취소권이 존재한다.(2항 참조)

(3) 속임수의 의미--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의미한다.(판례)

<조문 이외의 부분>

1. 의사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3. 무효사유와 취소사유가 경합하면 (예-행위무능력과 의사무능력이 겹칠 경우)

--->양자를 모두 주장할 수 있다.

<18조~21조(주소)>

1. 법조문만 보면 된다.

2. 21조에서 "그 행위에 관하여는" 부분을 유의

<22조~30조(부재와 실종)>

1. 재산관리인

- ①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다.
- ② 위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재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681조),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가 아니다) 또한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688조)
- ③ 재산관리인 선임의 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그간의 재산관리인이 한 행위의 효과는 부재자 또는 그의 상속인에게 미친다.(판례)

2. 23조

".....개임할 수 있다"를 "...개임하여야 한다'로 출제할 수 있으므로 주의.

3. 25조 (관리인의 권한)

(1) 보존행위(118조 1호)

부재자 재산에 대한 차임 청구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혹은 등기청구나 물건의 인도청구 등을 말하며, 재산관리인이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

(2) 이용행위와 개량행위(118조 2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거나 은행예금을 찾아 개인에게 빌려주는 것은 안된다는 점을 주의.

(3) 처분행위(25조)

- ① 법원의 허가는 이미 한 행위를 추인하는 의미로도 할 수 있다.(판례)
- ② 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부재자의 이익과는 무관한 용도로 처분한 경우에는 무권대리가 되어 무효가 됨을 주의.(판례)

4. 26조

2항의 보수청구권이 출제될 수 있다.(조문 그대로)

5. 27조

- (1) 5년(보통실종), 1년(특별실종)기간은 기본문제이다.
- (2) 이해관계인의 의미가 중요하다. 부재자의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후순위 상속인(부재자의 형이나 자매)은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판례)

6. 28조

- (1) 사망시점은 실종선고시가 아니라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임을 주의
- (2) 케이스로 사망 시점을 물어볼 수 있으니 기간계산법을 알아야 한다.(초일 불산입)
- (3) 추정이 아니라 간주임을 주의.
- (4) 사망의 효과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에 국한하여 사망한 것이 될 뿐임을 주의. 따라서, 돌아온 후에 실종자가 맺는 법률관계나, 신주소지에서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사망의 효과가 미치지 않고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실종선고는 권리능력 소멸과는 무관하다.)

7. 29조

- (1) 실종선고를 취소하게 되면 실종선고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 실종선고로 인해 생긴 법률관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됨을 주의.
- (2) 거래의 안전 보호 대책
 - ①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현존이익만 반환.(2항)
 - ②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인정된다.(1항 단서)
실종선고 후 취소 전을 확실히 암기하여야 하며, 이 때 선의의 의미는 쌍방이 선의임을 주의.

8. 30조

- (1) 간주가 아니라 추정임을 유의.
- (2) 동시사망자 상호간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 (3) 동시사망의 추정이 있어도 대습상속이 가능하다.(판례)

<32조>

이 때의 허가는 허가의 의미이다.(판례) 이는 45조에서 허가가 "인가"(판례)라는 것과 비교된다.

<35조(전부 중요)>

- 1.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는 면책규정이 없다. 즉, 무과실책임이다.
- 2. 대표기관은 불법행위요건(750조)을 구비하여야 한다.
- 3. 법인의 대표기관에는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직무대행자, 청산인이 있다. 그러나, 이사라 하더라도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판례)
- 4. 직무에 관한 행위인지 판단기준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판례) 따라서, 대표권한을 남용한 행위이거나, 대표기관이 법령의 규정에 위배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법인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판례)
- 5. 법인이 책임을 저도 대표기관은 그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35조 1항 후단)
- 6. 대표기관이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면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35조 2항)
- 7. 법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면 법인은 대표기관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61조, 65조)
- 8. 종중이나 노조 등 비법인사단의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도 적용된다.

<37조>

평소에는 주무관청이 감독. 그러나, 해산이나 청산시에는 법원이 감독(95조)

<40조(판례)>

- 1. 정관의 의미 :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이다.
- 2. 따라서, 다수결로 해석하는 것은 구속력이 없다.

<41조>

정관은 효력요건과 관련이 있다. 대항요건은 60조에 규정이 있다.

<42조>

- 1. 3분의 2를 외울 것. 그러나, 이는 정관으로 다르게 할 수 있다.(1항)
- 2.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이는 재단법인도 마찬가지이다.(45조 3항, 46조)

<43조>

40조 6호와 7호가 빠지는 것을 유의.

<44조>

요건을 주의. 즉, 자산이나 목적이 흠결되면 보충할 수 없다.

<45조>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증감이 있으면 이는 정관변경을 수반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무효.

<47조>

1항과 2항의 조문이 그대로 출제될 수 있다.

<48조>

1. 조문이 그대로 출제될 수 있다.
2. 판례가 중요---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등기를 필요로 한다. (등기하지 않으면 법인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9조>

40조의 정관사항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56조>

임의규정이다.(판례)

<57조>

66조와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필수기관인지 임의기관인지 여부)

<58조, 59조>

58조 2항, 59조 1항, 2항은 조문 그대로 출제된다.

<60조>

판례가 중요하다. 즉, 제3자에는 악의자도 포함된다.(보호된다.)

<61조, 65조>

조문 그대로 출제된다.

<62조>

1. 포괄적 대리권 수여는 금지된다.(판례)
2. 이사가 선임한 자가 불법행위를 하면 법인은 사용자책임을 진다.

<63조, 64조>

요건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71조>

1. 케이스로 출제될 수 있다.(1주일을 외울 것)
2. 발신주의임을 유의.

<73조>

3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77조>

1항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통 소멸사유이고 2항은 사단법인 고유의 소멸사유이다. 암기 요망.

<78조>

4분의 3 암기 요망

<81조, 89조, 90조, 92조>

조문 그대로 출제될 수 있다.

<94조>

판례가 중요하다. 즉, 법인의 소멸은 실제 사무가 종료되는 때이다. 청산등기시점이 아니다.

<98조 물건의 정의>

1.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특히 전기)도 물건이다.
2. 집합물도 특정되면 1개의 물건이 될 수 있다.(판례)

<99조 부동산과 동산>

1. 금전을 도난당하면 채권적 청구권(예-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2. 온천수는 독립한 물건이 아니라 소유권의 범위에 속한다. (판례)
3. 입목등기부에 기재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로 거래되며,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4.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이나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로 양도의 대상이 되지만, 저당권의 객체는 될 수 없다.
5. 농작물은 타인의 토지에 권원없이 심어도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며, 명인방법이 없더라도 경작자의 소유에 속한다.

<100조 주물과 종물>

자주 출제된다.

1. 종물의 요건을 정확히 암기할 것 (100조)
 - ① 주물의 상용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할 것
따라서, 일시적 용도 혹은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예-TV는 가옥의 종물이 아니다)
 - ② 독립한 물건일 것
주물의 구성부분이면 종물이 아니다.(예-책상서랍은 책상에 대해서 종물이 아니다.)
 - ③ 장소적 밀접성이 있을 것
 - ④ 주물과 종물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2.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3. 판례가 인정한 종물도 암기하여야 한다.
희집의 수족관건물, 주유소의 주유기, 농지에 부속된 양수시설, 백화점의 전화교환설비 등
4. 판례가 인정하지 않은 종물
 - ①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의 구성부분(부합물)이다.
 - ② 정화조는 건물의 구성부분이다.
 - ③ 호텔의 각 방실에 설치되어 있는 텔레비전·전화기, 호텔 세탁실에 설치된 세탁기·탈수기는 호텔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5. 종물의 효과

- (1)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100조 2항)
- (2) 주물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데(358조) 이는 저당권의 설정 전후를 불문한다.
- (3) 예외-유치권, 질권 등 점유가 있어야 인정되는 권리는 종물을 점유하지 않으면 주물의 처분에 따르지 않는다.
- (4) 물건이 아니고 권리가 주,종의 관계가 있어도 100조 2항은 준용된다.
- (5) 그러나, 100조 2항은 임의규정임을 유의.

<101조~102조>

- 1. 조문 그대로 출제될 수 있다.
- 2. 102조도 임의규정임을 유의.

<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전부 판례 공부이며 중요하다.

- 1. 동기가 반사회적일 뿐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아닐 때-그 동기가 법률행위를 할 때 표시되거나 이미 알려진 경우에 한하여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판례)
- 2. 부첩관계
 - (1) 처의 동기가 있어도 무효이다.
 - (2) 부첩관계를 끝내면서 하는 법률행위는 유효가 될 수 있다.
- 3. 주요판례
 - (1)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 (2)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로하는 행위(이는 108조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103조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
 - (3)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은 103조 위반이 아니다.
 - (4)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이 그 공권력의 행사에 두려움을 느껴 자유롭지 못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항상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110조 강박에 의한 행위이므로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다.)
 - (5)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은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므로 불법원인급여도 아니다.

4. 불법원인급여(746조)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미 급여한 것이 있으면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규정이 있음을 유의.

5. 이중매매

- (1)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이 있어야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된다.
- (2) 이 때,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6.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

모두 중요하다.

- ① 폭리자가 피해자의 공박, 경술, 무경험을 이용하였어야 한다. 즉 악의가 있어야 된다.
- ② 공박은 대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하겠지만,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판례)
- ③ 무경험은 해당 거래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 경험이 불충분한 것을 말한다
- ④ 공박, 경술, 무경험은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된다.
- ⑤ 대리인의 경우
공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경술,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⑥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 하여 법률행위가 곧 공박, 경술,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판례)
- ⑦ 증여와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에서는 불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판례)
- ⑧ 피해자는 이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반해, 폭리행위자는 돌려받을 수 없다.(746조 단서 때문)
- ⑨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추인하여 이를 유효한 것으로 할 수 없다.

<105조 임의규정>

- 1. 능력과 관련되는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 2. 강행규정(특히 효력규정)에 위반하면 무효이다.
- 3. 판례
 - (1)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규정들은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2) 금융실명제 위반은 단속규정일 뿐 효력규정이 아니므로 차명계좌의 예금도 유효하다.

<106조 사실인 관습>

오표시무해의 법칙이 간혹 출제된다.

- 1.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 (1) 자연적 해석
 - ① 오표시무해의 법칙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유언)의 경우의 해석방법이다.
 - ② 오표시무해의 법칙
 - 갑은 자동차를 1,100만원에 팔려고 청약하였는데 청약서에 1,000만원으로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을이 갑의 진의를 알고 승낙을 하면 1,100만원에 계약은 성립한다.
 - 갑 토지라고 생각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는 을 토지라고 기재한 경우에는 갑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 (2) 규범적 해석
거래 상대방의 입장에서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 2.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순서)
 - (1) 목적->사실인 관습(106조)->임의규정-신의칙(2조)
 - (2) 사실인 관습이 임의규정보다 먼저 해석의 기준이 되는 것을 유의.
 - (3)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은 다르다. 사실인 관습은 법적 확신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이다.(판례)

<107조 비진의표시>

1. 1항에서 요건과 효과를 정확히 외울 것. (조문 자체의 출제 대비)
 표의자가 비진의표시를 하였는데
 - ①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몰랐거나(선의) 알 수 없었다면(무과실)--->그 법률행위는 유효.
 - ②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다면(과실)----->그 법률행위는 무효.
2. 진의의 의미(판례)
 비진의표시에 있어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대표권 (혹은 대리권) 남용 (판례)
 대리인이나 법인의 대표가 횡령(대리권 남용 혹은 대표권 남용)을 할 의도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남용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적용) --->즉, 본인이나 법인은 적어도 계약책임은 지지 않는다.(불법행위 책임은 별론)

<108조 허위표시>

1. 허위표시는 반사회질서행위는 아니다. (판례) 따라서, 불법원인급여(746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허위표시는 무효이지만 채권자취소권의 대상(406조)이 된다.(판례)
3. 은닉행위는 유효이다.
4. 108조 2항의 의미
 - (1) 선의자이면 되지 무과실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2)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판례)
 - (3) 제3자에는 포괄승계인(상속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 (4) 제3자의 정의: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 (5) 파산관재인도 제3자에 해당한다.(판례)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 동기의 착오
 - (1)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요건
 그 동기가 표시되었거나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이어야 한다.(판례)
 - (2) 시가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
2.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이어야 취소가 가능하다.
 - (1) 판례가 인정한 중요부분
 - ① 중요부분의 착오의 의미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다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주관적 기준),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있었다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객관적 기준)
 - ② 물건이나 사람의 동일성의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이므로 취소가 가능하다.
 - ③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이므로 취소가 가능하다.
 - ④ 표의자가 착오에 빠졌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다면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2) 입증책임
 착오의 존재 및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은 표의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3. 법률행위를 할 때에 중과실이 있으면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도 취소할 수 없다.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표의자의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진다.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의 문제가 아니라 하자있는 의사표시의 문제이다.
2. 부작위(침묵)에 의한 사기
 - (1) 인정판례 : 임차권양도계약 체결당시 임차권 양도인이 임대인의 동의여부를 양수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는 기망행위이다.
 - (2) 부정판례

교환계약시 시가나 가격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다.
3. 사기나 강박의 인과관계는 표의자의 주관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도 무방하다.
4.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인 경우에는 의사 자체가 없는 것이 되어 무효이다.
5. 제3자에 의한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의사표시를 한 피해자는 무조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하여 표의자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109조 2항)
6. 대리인이 거래 상대방에게 사기나 강박을 하여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110조 1항이 적용되어 상대방은 무조건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피용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사기나 강박을 하여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110조 2항이 적용되어 상대방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하여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의사표시가 도달을 하여야 한다.
2. 도달의 의미: 도달이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한다.
3. 도달주의에 대한 예외-발신주의
 - ①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무능력자측의 확답(15조)
 - ②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131조)
 - ③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의 최고에 대한 채권자의 확답(455조)
 - ④ 총회소집의 통지(71조)
 - ⑤ 격지자간의 계약의 성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531조)
4. 2항은 그 자체로 자주 출제된다. : 표의자가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12조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1. 조문자체가 자주 출제된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1항)
2.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그 도달을 안 후에는 의사표시 수령인이 제한능력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은 대항할 수 있다. (2항)

<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1. 2항을 주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대리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한다.(2항)
2. 이 때, 대리인은 착오를 주장할 수 없다.

<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1.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1항)
2. 따라서, 대리인의 행위에 착오가 있었거나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하였다면 취소권이 발생하는데 이는 본인이 행사하는 것임을 유의.
3. 그러나,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사기나 강박을 하였다면 이는 116조의 문제가 아니며, 본인이 상대방에게 사기나 강박을 한 것과 같으므로 상대방은 110조 1항에 의해서 무조건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4. 또한,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하였다면, 예외적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2항)

<117조 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118조 대리권의 범위>

1.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본 조문은 적용된다.
2.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보존행위를 무제한할 수 있다.(1호)
3.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관리행위(이용 또는 개량행위)를 할 수 있는데, 대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성질을 변하게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행위는 할 수 없다.
4. 판례
대리인이 처분행위를 하는 것은 대리권의 범위 밖이다. 즉,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자는 대여금 일부를 면제할 권한은 없고,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담보권설정계약을 위임받은 자는 계약 체결 후 이를 해제할 권리까지는 없다.

<119조 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일 때 각자대리가 원칙이다.

<120조~121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1.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다.
2. 그 때, 복대리인의 행위로 본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임의대리인은 복대리인의 선임이나 감독에 대해서 잘못이 있을 때만 본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그런데, 그 복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해 선임된 경우에는 임의대리인은 책임이 더욱 감경된다. 즉, 그 부책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통지나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122조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1.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 대신, 복대리인의 행위로 무능력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무과실책임을 진다.
2.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 감독상의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123조 복대리인의 권한>

조문 자체가 출제된다.

1. 복대리인은 직접 본인을 대리하므로, 복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따라서, 복대리인은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본인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다.

<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1. 본인의 허락이나 채무의 이행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2.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3. 위반하면 무권대리가 된다.

<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 대리권을 추단시키는 일정한 직함, 명칭, 상호 등의 사용의 승낙 또는 묵인도 대 리권 수여의 표시로 보아 125조가 적용된다.
2. 법정대리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3. 만약 표시된 범위를 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본조가 적용된다.
 - (1) 기본대리권은 대리행위와 동종일 필요가 없다.
 - (2)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3) 공법상의 행위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2. 복대리나 사자가 월권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면 본인은 126조 책임을 진다. (임의대리인이 복임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대리를 임명한 후 그가 본인을 위하여 월권행위를 한 경우)
3. 대리인이 본인 소유의 등기서류를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로 원인무효의 등기를 한 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면
 - (1)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더라도 126조에 의해서는 보호될 수 없다.
 - (2) 본인이 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상대방은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이 때, 본인이 추인하는 법적 근거는 사적 자치이다.(판례)
4. 대리인이 월권행위를 하였을 때 그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더라도 126조를 주장할 수 없다.
5.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월권행위에 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어야 하는데, 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6.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7. 제126조에서 보호되는 제3자는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지칭한다. 즉, 전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8.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기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

<127조 대리권의 소멸>

조문을 암기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성년후견이나 파산은 요건이 아니다.
2. 본인이나 대리인의 한정후견은 요건이 아니다.

<128조 임의대리의 종료>

임의대리의 종료사유에는 127조 외에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나 수권행위의 철회가 추가된다.

<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1.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2. 복대리에도 적용된다.(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대리를 임명하였는데, 그가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 그는 보호된다는 의미)

<130조, 132조, 133조 무권대리의 추인>

1.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추인을 하면 소급효가 있다.
3.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장기간 방치한 경우에 판례는 이는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4. 일부추인 혹은 내용을 변경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다.
5. 추인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 행위의 직접의 상대방 및 그 무권대리 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6.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후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131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권>

1.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해서 본인이 침묵하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2. 최고기간은 1개월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다.
3. 발신주의이다.
4.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서 최고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본인에게 하여야 한다.

<134조>

1. 상대방은 본인이나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무권대리인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2. 상대방이 악의자이면 철회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3.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철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135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1. 요건이 중요하다.
특히,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하고, 무권대리인이 행위무능력자이면 안된다.
2.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선택하는 자는 거래상대방이다. 무권대리인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136조 단독행위와 무권대리>

1. 단독행위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또는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과 같이 다루어진다. 즉, 본인은 추인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수동대리의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경우이어야 한다.
3. 그러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즉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136조가 적용되지 않고 무조건 무효가 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137조>

1.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함이 원칙이다.
(일부 유효가 원칙이 아님을 주의)
2. 일부취소는 민법에 규정이 없지만 판례가 인정. 즉, 가분성이 있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138조>

1.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그 신고는 친생자 출생신고로서는 무효이지만 인지신고로서는 유효하다.(판례)
2. 가정적 의사가 요건이다.

<139조>

1. 강행법규 위반의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은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없다.
2. 무효행위를 추인하여도 소급효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유동적 무효 판례>

1.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토지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매매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2. 甲이 乙의 강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상태에서 甲은 강박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3.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토지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계약 해제를 할 수 없다.
4.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인 경우에 그 계약은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140조>

1. 제한능력자는 취소권을 행사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2. 제한능력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141조>

1.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취소된 법률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의무가 있다
2. 이 규정은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에도 준용된다.(판례)

<142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즉, 전득자가 있는 경우에 전득자가 취소의 상대방이 아니다.

<143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된 이상 그 이후에는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으로서 추인할 수 있다.(판례)

<144조>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2. 따라서, 미성년자는 성년자가 되어야만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추인하여야 한다.

<145조>

1. 법정추인의 요건 6가지를 외울 것.
 - ① 전부나 일부의 이행
 - ② 이행의 청구
 - ③ 경개
 - ④ 담보의 제공
 - 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 ⑥ 강제집행(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집행을 받는 경우도 포함)
2. 법정추인도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는 점을 주의.
따라서, 미성년자는 성년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145조의 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법정추인이 아니다.
3.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권리를 양도하면 법정추인이 아님을 유의.

<146조>

1. 조문 자체를 암기.
2. 취소권의 존속기간의 법적 성질은 제척기간이다.

<147조>

1.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그 부관은 불확정기한이 아니라 조건에 해당한다.
2. 건축허가를 받지 못할 때에는 토지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약정은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3.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즉, 조건은 기한과 달리 특약에 의한 소급효가 인정된다.
4. 조건에는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고,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다.(판례)
5.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48조>

(조문 자체가 출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149조>

(조문 자체가 출제)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150조>

1. 조문 자체가 출제.
2.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는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판례)

<151조>

1. 조문 자체가 자주 출제.
2.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3.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4. 법률행위에 부가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됨을 주의.

<152조>

기한에는 소급효가 없으며, 당사자간의 특약으로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153조>

1. 기한의 이익에 대해서 다른 약정이 없을 경우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3. 기한의 이익 상실의 특약에 있어서 그것이 정지조건부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인지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 상실의 특약인지 불분명한 경우 형성권적 기한이익의 상실 특약으로 추정된다.

<155조>

기간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156조~161조>

조문 자체가 출제

<162조>

1. 조문 자체가 출제
2. 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는 경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판례)
3.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공유물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판례)
4. 지상권이나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5.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한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163조~164조>

1. 3년 소멸시효기간과 1년 소멸시효기간을 비교할 것.
2. 이자채권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165조>

1. 조문 자체가 출제
2.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주채무의 시효기간이 연장되더라도 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판례)

<166조>

1. 조문자체가 출제
2.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를 들면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사실상의 장애는 포함되지 않는다. (판례)
3.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채권자가 안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2항 참조)

<167조>

소멸시효 완성은 소급효가 있음을 유의

<168조>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외울 것.

<169조>

1. 조문 자체가 출제.
2. 손해배상청구권을 공동상속한 자 중 1인이 자기의 상속분을 행사하여 승소판결을 얻었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

<170조>

1. 조문 자체가 출제
2.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채권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주장을 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판례)
3. 그러나, 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채권자가 응소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4.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은 시효중단 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오납한 조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비록 행정소송이라 하더라도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대판)

<174조>

1. 6개월을 암기.
2.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내에 한 최고만 그 효력을 가진다.(판례)

<176조~178조>

조문자체가 출제

<179조~182조>

1. 소멸시효 정지사유 4가지를 암기할 것.
2. 천재지변은 1개월임을 유의.

<183조>

조문 자체가 자주 출제

<184조>

1. 조문자체가 자주 출제
2. 특히, 소멸시효는 배제, 연장, 가중은 불가. 단축, 경감은 가능함을 유의
3. 소멸시효 완성 전에는 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